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다.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함

라.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바. 위험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을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의 세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6조의2제1항 본문 중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을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상황, 열차의 진출입 및 운행상황, 차량 검수상황, 철도시설의 운영상황 및 현장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철도운영자는”을 각각 “철도운영자등은”으로 한다.

제96조 중 “2017년 1월 1일”를 “2020년 1월 1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7, 별표10, 별표 11, 별표 1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운전자

() : 시간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6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24)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386) • 비상시 조치 등(60)
	340시간	470시간
제1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6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7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24)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386) • 비상시 조치 등(60)
	340시간	470시간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680)	• 철도관련법(5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5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11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24)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326) • 비상시 조치 등(60)
	270시간	41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 (340)	• 철도관련법(50) • 철도시스템 일반(4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24) • 비상시 조치 등(30)

	170시간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440)	• 철도관련법(5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4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8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84) • 비상시 조치 등(40)
	200시간	24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운전면허 소지자

() : 시간

소지면허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420)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15) • 고속전기차량의 구조 및 기능(85)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10) •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비상시 조치 등(60)
		140시간	280시간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12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52) • 비상시 조치 등(10)
		50시간	70시간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120)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52) • 비상시 조치 등(10)
		50시간	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8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2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7) • 비상시 조치 등(5)
		40시간	40시간
제1종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12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52) • 비상시 조치 등(10)
		50시간	70시간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120)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1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52) • 비상시 조치 등(10)
		50시간	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70)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7) • 비상시 조치 등(5)
		30시간	40시간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140)	• 철도시스템 일반(10)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4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67) • 비상시 조치 등(5)
		60시간	80시간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140)	• 철도시스템 일반(10)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45)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67)

	노면전차 운전면허 (70)	합) 등(5)	• 비상시 조치 등(5)
		60시간	80시간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10)	• 현장실습교육(8)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15)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7)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5)	• 비상시 조치 등(5)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460)	30시간	40시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비상시 조치 등(4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460)	200시간	260시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비상시 조치 등(40)
		• 운전이론(30)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40)	200시간	260시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24)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 등(30)
		• 운전이론(30)	
		170시간	170시간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노면전차 운전면허 (240)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8)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92)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60)	• 비상시 조치 등(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120시간	12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460)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00)	• 비상시 조치 등(40)
		• 운전이론(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제1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460)	200시간	260시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비상시 조치 등(40)
		• 운전이론(30)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40)	200시간	260시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24)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 등(30)
		• 운전이론(30)	
		170시간	170시간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철도장비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8)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24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60)	• 훈련(92)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비상시 조치 등(20)
		120시간	12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철도차량 운전관련 업무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철도 장비의 경우 철도장비운전 업무수행경력 3년 이상)	디젤 또는 제 1종 차량 운전면허 (36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20) •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0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24) • 비상시 조치 등(30)
		190시간	170시간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이 2년 이상	제2종 전기 차량운전면허 (360)	• 철도관련법(30)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90) • 운전이론 일반(3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24) • 비상시 조치 등(30)
		190시간	17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20)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17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훈련(62) • 비상시 조치 등(20)
		80시간	90시간
철도차량 운전 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120)	• 철도관련법(20) • 철도시스템 일반(1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4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2) • 비상시 조치 등(10)
		80시간	40시간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작업 경력 1년 이상	철도장비 운전면허 (210)	• 철도관련법(20) • 철도시스템 일반(20)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 현장실습교육(8)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62) • 비상시 조치 등(20)
		120시간	9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디젤 또는 제 1종 차량 운전면허 (500)	• 철도관련법(30) • 철도시스템 일반(30) • 디젤 차량 또는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15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 현장실습교육(16)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비상시 조치 등(30)

		등(20)	
		250시간	250시간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50)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3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204)
		• 전기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100)	• 비상시 조치 등(30)
		• 운전이론 일반(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20)	
		200시간	250시간
	철도장비 운전면허 (270)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철도시스템 일반(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04)
• 기계·장비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 등(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130시간	140시간	
노면전차 운전면허 (270)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104)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 등(2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130시간	14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버스 운전 경력자

() : 시간

경력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이론교육	기능교육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노면전차	• 철도관련법(30)	• 현장실습교육(16)
	운전면허	• 노면전차시스템 일반(20)	•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70)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70) •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10)	훈련(104) • 비상시 조치 등(20)
		130시간	140시간

* 이론교육의 과목별 교육시간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6. 일반사항

가. 철도관련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법령 및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운전업무 수행경력이란 운전업무종자사로서 운전실에 탑승하여 전방 신호감시 및 운전관련 기기를 실제로 취급한 기간을 말한다.

라. 모의운행훈련은 전(全) 기능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 교육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및 컴퓨터지원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마.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전관련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이론교육의 해당 교과목 시간을 이수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론교육의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면제할 수 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운전면허 시험의 응시자별 면허시험 과목

가. 일반응시자·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버스 운전 경력자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비고

1. 철도 관련 법은 「철도안전법」과 그 하위규정 및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다.
2. 철도차량 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 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버스 운전 경력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철도운전관련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이론교육 교과목의 시간을 이수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이론교육을 면제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운전면허 소지자

소지면허	응시면허	필기시험	기능시험
디젤차량 운전면허	고속철도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 고속철도 운전 관련 규정 • 비상 시 조치 등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운전면허	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주)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비상 시 조치 등

철도장비 운전면허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노면전차 시스템 일반 - 노면전차의 구조 및 기능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운전이론 일반	
노면전차 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 준비점검 - 제동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 신호 준수, 운전 취급, 신호·선로 숙지 - 비상 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운전이론 일반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 관련 법 - 철도시스템 일반 - 운전이론 일반	

비고 :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증명서류를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철도 관련 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나.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3.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위반사항 및 내용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마.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사. 한쪽 다리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아.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	법 제20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 잃은 사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면허취소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1천만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5의2. 법 제40조의 2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4개월
	철도차량의 운행장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경고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5의3. 법 제40조의 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효력정지 1개월	면허취소			

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10.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7호	면허취소			
11. 철도차량 운전직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8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비고: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

실무수습·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제2항관련)

1. 일반인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 조치 등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8,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00시간 이상 또는 6,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노면전차운전면허		3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2. 일반인 신규 운전면허취득자 외의 운전면허취득자

면허종별	실무수습·교육항목	실무수습·교육시간 또는 거리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선로·신호 등 시스템 - 운전취급 관련 규정 - 제동기 취급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속도관측 - 비상시조치 등	200시간 이상 또는 10,000킬로미터 이상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디젤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4,000킬로미터 이상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00시간 이상 또는 3,000킬로미터 이상
철도장비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노면전차운전면허		15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의 무인운전 구간의 경우 100시간 이상 또는 1,500킬로미터 이상

3. 운전업무종사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60시간 이상 또는 1,2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철도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운전업무종사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킬로미터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신설선(신규노선)연장, 이설선로의 경우 수습구간 거리에 따라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제11조에 따라 영업시운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선로견습 대체 가능.

가.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미만 : 1왕복 이상

나. 수습구간이 10킬로미터 이상~20킬로미터 미만 : 2왕복 이상

다. 수습구간이 20킬로미터 이상 : 3왕복 이상

6. 비교

- 운전실무수습·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 실무수습 교육거리는 선로견습, 시운전, 실제 운전거리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생략)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 ----- ----- ----- ----- --.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① (생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운전할 구간 또는 철도차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7조(운전업무 실무수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별도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생략)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이 충돌
격을 받거나 철도차량에 화재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철도운영자등
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3. (현행과 같음)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
3제1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발생한 경우에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여객의 대기·승하차 및 이동상황, 열차의 진출입 및 운행상황, 차량 검수상황, 철도시설의 운영상황 및 현장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등은 -----

② 철도운영자등은 -----

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9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77조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4. ~ 5. (생략)

----.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 2020년 1월 1일을 ----

1.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